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일, 박정현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현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서기영 전문위원)

가. 총괄 검토

파산(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정리할 위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임. 이후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미변제 채무를 면책을 받으며 채무자가 복권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파산절차가 완료됨.¹⁾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²⁾ 파산절차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 이는 개인이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파산절차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³⁾에 준하여 2006년 신설된 조항임.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각종 신분·자격 또는 인허가 등에서 배제(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 하에,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들에 규정된 결격사유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1)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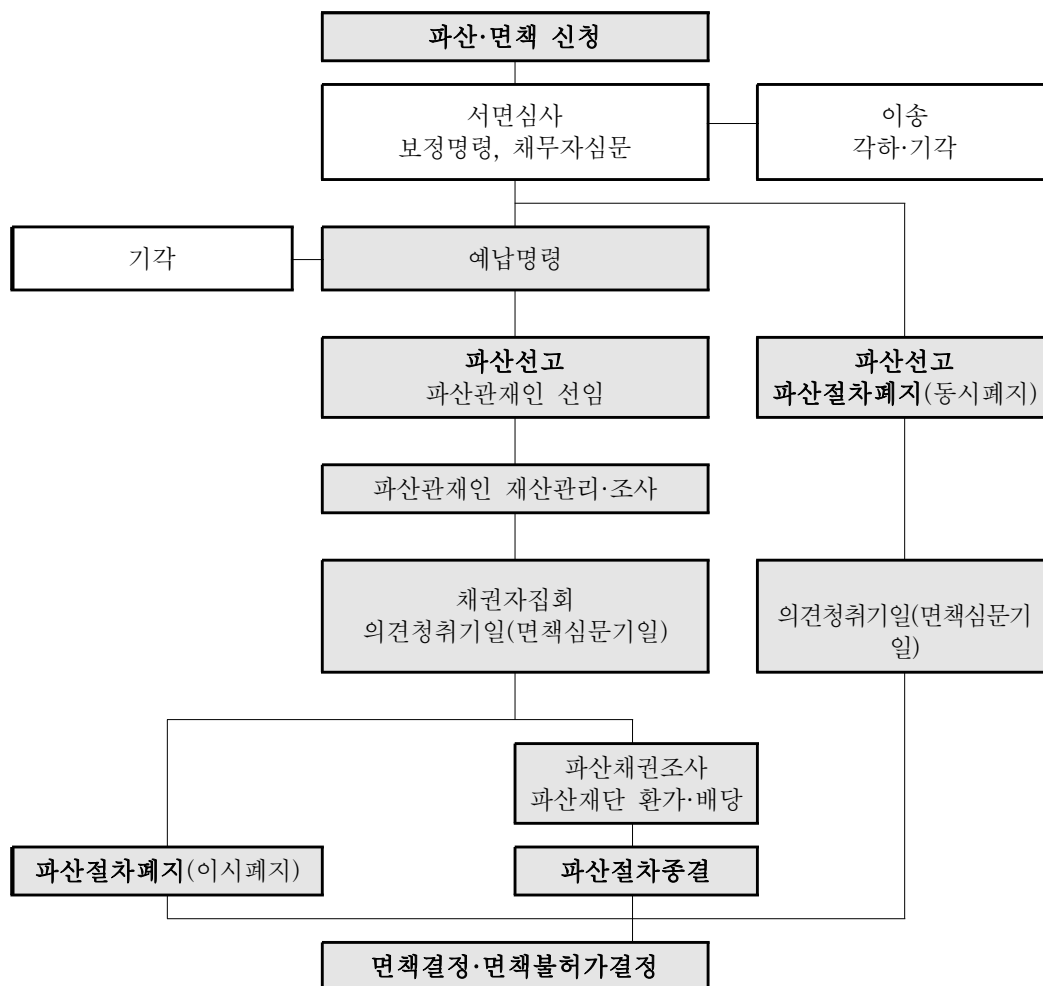
3)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4)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의안번호 1725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p.2.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신분·자격 또는 인허가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영업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과잉규제가 될 수 있고,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여 성실한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의 취지와도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자료: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파산선고로 인한 경제적 궁핍상태가 개인의 직위·자격 및 인허가에 따른 행위를 공정·청렴하게 수행하는데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법상 결격조항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는 대상 직위·자격 또는 인허가 등이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거나 거래상·재산상 신용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⁵⁾은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임.

5)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 (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나. 개별 법률별 검토

1) 「경비업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일반 및 특수)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제5조제2호·제10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및 특수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그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경비가 필요한 시설·장소나 물건에 대한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의 방지를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음.

경비업 법인의 임원은 경비업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인바, 위와 같은 경비업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자는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경비지도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이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모두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함.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갱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경비원·경비지도사로서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 경비원·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인 점,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재산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경비 대상 시설 및 재산 등에 대한 경비업무를 도급(위임·위탁)한 소유자 등과 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 종사자, 즉 법인의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업무인 점, 경비업 종사자가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비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당연퇴직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27조).⁶⁾

현행	개정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략)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7조(당연퇴직) ----- ----- ----- ---제8조제2항제6호는----- ----- ----- ----- ----- ----- ----- -----

6) 공무원 인사관계법률에서는 당연퇴직의 경우 임용 결격사유와는 달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지 아니한 경우만을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성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 자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임용이나 지위 유지에 있어서 높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규제 관련 법집행(사행행위, 풍속업소 단속 등)을 담당하고, 타인의 민감한 권리관계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경찰의 업무 특성상, 파산자를 임용할 경우 금품수수 의혹 등 경찰공무원의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함) 등록⁷⁾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5. (생략)	제4조(결격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5.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⁸⁾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려는 목적의 법이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 등,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

7) 제조·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도 해당

8)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의 경광등 및 도색·표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 제조·판매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⁹⁾).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직접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이를 일반 물품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업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 무분별한 유통 등을 제재처분, 벌칙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영업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제조·판매업을 수행하며 경찰 장비의 물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비나 물품의 생산·납품에 차질이 발생할

9)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우려가 있고, 경찰 장비의 원활한 구매·생산·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안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당연퇴직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삭제 및 제69조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2호 삭제 및 제61조제2호).¹⁰⁾

<「국가공무원법」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8. (생략)	제33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8. (현행과 같음)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	제69조(당연퇴직) ----- ----- -----. 1. ----- ----- 제33조제5호는 ----- ----- ----- ----- ----- ----- -----

10) 공무원 인사관계법률에서는 당연퇴직의 경우 임용 결격사유와는 달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지 아니한 경우만을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 ----- ----- ----- ----- -----. 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8. (생략)	제31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8.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u>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u>	제61조(당연퇴직) ----- ----- -----. 1. ----- ----- 제31조제5호는----- ----- -----

현행	개정안
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 ----- ----- ----- ----- ----- ----- ----- 2.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채무정리를 위해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를 이유로 공무원 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성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직역으로서 그 임용이나 지위 유지에 있어서 높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파산제도의 취지, 공무원이라는 직역이 담당하는 업무와 그 지위 및 신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 해당 결격사유의 입법적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의 다양성과 그 영향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취업·자격증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개정과 달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채무정리를 위해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결격 조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기부금품¹²⁾ 모집자의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¹¹⁾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④ ~ ⑥ (생략)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1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 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청은 i) 모집·사용계획서가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13)에 따른 공익에 적합한지, ii)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12)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13)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 3) 환경보전
 -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 5) 보건·복지 증진
 -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현행법에 따른 기부행위가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나, i)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입법목적¹⁴⁾, ii) 현행법이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위반시 형벌을 부과한다는 점¹⁵⁾, iii)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사용명세 등을 공개¹⁶⁾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iv) 기부금품 모집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 「기부금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기부금품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용)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16) 「기부금품법」

제14조(공개 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중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3항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재산상 신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6) 「도로교통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등록 결격사유, 그리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부학감(학감을 보좌하는 사람)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도로교통법」 제102조제1항제2호·제105조제2호나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6. (생략)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현행	개정안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생략)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 아. (생략) 3.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 ~ 아.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시·도경찰청장은 학원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됨.

전문학원은 등록된 학원 중 학감, 기능검정원,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학원으로서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¹⁷⁾를 면제받게 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위와 같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일부

17) 연습운전면허의 기능 시험이 면제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3)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원은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학과·기능·도로주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학원은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기능검정(장내기능·도로주행)’을 실시할 수 있는 공적인 권한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운전학원을 등록하거나(설립·운영자), 전문학원의 교육·검정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학감)에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운전학원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수강생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 8. (생략)	제7조(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8.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사격과 사격장 운영에 따른 안전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

사격장 설치·운영자의 자격에 있어서 거래상의 신뢰 또는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볼 여지는 적어 보이나, 다만 사격장 설치·운영자의 재산상 궁핍 등이 총기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사격장 설치자는 소지허가 없이 총포·석궁·화약류(실탄) 등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급 부적격자를 사전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전 분쟁 또는 재산상 궁박 상태로 인한 총기 사용 범죄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총기 등 사고 사례>

- '17. 4. 20. 권총으로 은행 직원들을 위협하여 현금 1,563만원 강취 후 도주(검거 완료)
- '17. 6. 9. 집주인과 월세 문제로 시비되어 집주인을 향해 공기총 발사
- '17. 8. 22. 재산 문제로 동거녀 협박
- '18. 11. 7. 임대인이 임차인과 가게 권리금 문제로 시비되어 임차인에게 총기로 협박
- '20. 1. 13. 채무 관계를 이유로 지인을 공기총으로 협박

※ 자료: 경찰청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사행행위영업¹⁸⁾의 허가 결격사유 및 사행기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¹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2호나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다. ~ 아. (생략) 3. (생략)	제6조(허가의 제한)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 ~ 아.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18) 복권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19)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①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판매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의 제한, 조건부 영업허가 및 영업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 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사행기구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행행위영업은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사행기구 제조·판매업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 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인데,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및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본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재산상 궁박 상태로 인한 사행행위영업자와의 유착 등이 우려되므로 공공성이나 신뢰성이 요구되는 영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사행행위규제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파산자에게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할 경우 재산상 궁박 상태로 인한 불법 사행행위 영업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새마을금고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회원의 당연탈퇴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현행법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²³⁾)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새마을금고법」 제10조제2항제2호·제21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탈퇴 등) ²⁰⁾ ① (생략)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4. (생략) ③ ~ ⑦ (생략)	제10조(탈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²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 ²²⁾ 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18.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 「새마을금고법」

제10조(탈퇴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4.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③ 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금고는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예탁금·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1)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

새마을금고는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²⁴⁾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예·적금 수납, 대출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① 새마을금고 회원의 당연탈퇴 사유 검토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회원은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²⁵⁾할 것을 자격 요건으로 함.

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에게 제1항(제12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22)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23)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24)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5) 「새마을금고법」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그러나 회원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재산²⁶⁾ 외에 대부분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금고에 대한 출자금도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이 인출하므로 회원 자격 유지가 어렵다는 점, ii) 이에 민법상 조합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로 파산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금고·중앙회 임원 결격사유 검토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고, 중앙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두고 있음.²⁷⁾

i) 임원은 일반 회원과 달리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 중요사항을 결정·집행하거나 감사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가능성이 있고,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7)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ii) 이에 현행법은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 수행시 고의나 과실로 끼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²⁸⁾ ii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한 수재죄·증재죄·알선수재죄²⁹⁾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임원에게는 높은 신뢰성과 재산상 신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28)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조제2호 및 제40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이 법에서 ‘제조’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안전관리 활동을 말함.

현행법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에게만 허용하면서 등록의 결격사유³⁰⁾를 두고 있으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승강기부품안전인증³¹⁾ 또는 승강기안전인증³²⁾을 받도록 하는 등 승강

30) 「승강기안전관리법」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1)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2)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

기 및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파산선고 여부’와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의 안전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보아 해당 사유를 등록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재산상 궁핍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만, 현행법령은 승강기 관련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및 기술인력·설비 등을 일정 기준 이상 갖추도록 규정³³⁾하고 있는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해당 업을 수행할 경우 재정적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저가 제품 사용, 부실 점검,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는 것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는 것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관련업 등록 시 일정기준 이상 자본금 보유 요건이 있으며 업체의 재정적 악화는 제품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2(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고,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의미함.³⁴⁾

i)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인허가 권한은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³⁵⁾ 옥외광고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득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행위를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정성·청렴성 등이 요구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ii) 현행법상 옥외광고사업 등록시에도 기술능력·시설·안전교육이수 등의 요건만 요구되고 있다는 점³⁶⁾ 등을 고려할 때,

과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공공성 및 재산상 신용이 크게 요구되는 업종은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12) 「재해구호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의연금품 모집허가 결정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재해구호법」 제17조제5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6. (생략) ⑥·⑦ (생략)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재해구호법」은 재난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의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의연금품(義捐金品)³⁷⁾”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³⁸⁾하고 있음.

37)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8) 「재해구호법」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

개정안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의연금품 모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허가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재난 피해자 구호 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만, 의연금품은 재난 피해자를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연금품의 특성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을 받지 아니하여 아직 경제적 궁핍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의연금품을 모집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明細)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 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
- ② 삭제 <2012. 10. 22.>
- ③ 삭제 <2012. 10. 22.>
- 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모집자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재산상 신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대한 검토(안 제13조)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략)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함)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³⁹⁾된 법인으로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업무,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⁴⁰⁾.

39) 「제주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40) 「제주도법」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법상 개발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는데⁴¹⁾, 이사장은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며 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⁴²⁾.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i)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사업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집행하거나 감사하며 직위를 이용한 이익추구 가능성이 있고, ii) 이에 현행법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직무상

-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 라.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 업무
 -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 나. 옥외광고사업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41) 「제주도법」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42) 「제주도법」

제17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⁴³⁾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발사업·투자유치·자금조성 및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는 개발센터 임원에게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43) 「제주도법」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이하 “총포 등 제조업”이라 한다)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호 삭제).

나아가 준용규정에 따라 총포 등 판매업 및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 등 임대업 허가의 결격사유, 총포 등의 수출·수입 허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결격사유에서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제></u>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6. (생략)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6.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법률로서, 주로 총포 등의 제조, 판매, 수출수입, 소지 등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총포 등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달성하는 데 있어서 파산선고 여부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제조업자 등의 재산상 궁핍이 총포 등의 부실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총포 등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협회는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안전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는데,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함.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제외 여부는 위와 같은 협회 임원의 업무 성격과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는 소지허가 없이 다량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보관 가능하므로 취급 부적격자를 사전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전 분쟁 또는 재산상 궁박 상태로 인한 총기 사용 범죄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5) 「행정사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행정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행정사법」 제6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7.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인허가 신청 등 대리, 행정 관련 상담·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⁴⁴⁾하는 전문자격사임.

i) 행정사의 업무는 대부분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각종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성격이나, 현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은 의뢰인이 소송이나 인·허가 신청 등을 위하여 법원·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공신력 있는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해당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의 여지가 있다는 점, ii) 이에 현행법도 행정사에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⁴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에게는 높은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44)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45) 「행정사법」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의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경비업법」 중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옥외광고사업 등록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법률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침

- [붙임] 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20.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의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경비업법」 중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옥외광고사업 등록 결격조항은 삭제하되 나머지 14개 법률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수정주요내용

가. 일부 법률을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 제명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변경함.

나.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재해구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은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삭제).

다. 「경비업법」중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 옥외광고사업 등록 결격조항은 삭제함(안 제1조 및 제11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16개”를 “2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u>16개</u> 법률 일부개정을 위 한 법률 <u>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u> <u>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u> <u>한다.</u> <u>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u> <u>제2조(「경찰공무원법」의 개정)</u> <u>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u> <u>같이 개정한다.</u> <u>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u> <u>제27조 단서 중 “제8조제2항</u> <u>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u> <u>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u> <u>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u> <u>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u> <u>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u> <u>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u> <u>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u> <u>을 “제8조제2항제6호는”으로</u> <u>한다.</u>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u>2개</u>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u>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u> <u>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u> <u>한다.</u> <u>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제3조(「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호 단서 중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
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
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을
“제33조제5호는”으로 한다.

제5조(「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5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삭 제>
제7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삭 제>
제8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삭 제>
제9조(「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삭 제>
제10조(「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삭 제>

<u>제40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12조(「재해구호법」의 개정)</u> <u>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u> <u>이 개정한다.</u> <u>제17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u>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u> <u>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u> <u>특별법」의 개정) 제주특별자</u> <u>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u> <u>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u> <u>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76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u>제14조(「지방공무원법」의 개정)</u> <u>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u> <u>같이 개정한다.</u> <u>제31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61조제1호 단서 중 “제31조</u> <u>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u> <u>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u> <u>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u> <u>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u> <u>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u> <u>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u> <u>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을</u> <u>“제31조제5호는”으로 한다.</u>	<u><삭 제></u>
<u>제15조(「충포·도검·화약류 등</u>	<u><삭 제></u>

<u>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u> <u>제55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16조(「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삭 제></u>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단서 중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을 “제10조제2항제4호는”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경비업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 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아니한 자</u> 3.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 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 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는 1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 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 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 고,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0 조제1항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 직) ----- ----- -----. ----- ----- ----- ----- ----- ----- -----제10조제2항제4호는--- -----

<u>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u>	-----
<u>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u>	-----
<u>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u>	-----
<u>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u>	-----
<u>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u>	-----
<u>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u>	-----
<u>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u>	-----
<u>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u>	-----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u>	-----
<u>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u>	-----
<u>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u>	-----
<u>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u>	-----
<u>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u>	-----
<u>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u>	-----
<u>해당한다.</u>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생략)	제11조의2(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현행과 같음)